

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 연구비 관리 내규

제 1 조 목적 [신설 2024.03.25.]

이 연구비 관리 내규는 한국중동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제 2 조 적용 [신설 2024.03.25.]

1. 한국중동학회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대회에서 발생하는 비용 산정은 본 기준을 적용함
2. 외부 기관과 협력 시 해당 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적용함
3. 학술대회 연구비 항목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는 회장단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

제 3 조 인건비 구분 [신설 2024.03.25.]

1. 원고비

한국중동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일정 분량 원고를 제출하거나 당일 세션을 관장하는 전체 참가자에 대한 원고비

2. 일용직 인건비

한국중동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학술대회 일정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학생 및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

제 4 조 원고비 [신설 2024.03.25.]

1. 정의

- ① (발표자 원고비)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자로 학술대회 자료집에 일정 분량의 원고를 게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- ② (토론자 원고비)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일정 분량의 토론문을 제출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
- ③ (좌장 원고비)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의 좌장으로 담당 분과의 전체 원고 및 토론문을 숙지하고 분과를 운영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
2. 계상기준

① 발표자 원고비

발표문 A4 10 쪽 혹은 PPT 슬라이드 20 개 내외를 학술대회 자료집에 게재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완료한 경우

② 토론자 원고비

토론문 1 쪽 이상의 토론문을 학술대회에 제출한 경우

원고비는 토론을 위한 발표자 원고자료의 분량을 고려하여 계상

③ 좌장 원고비

별도의 원고를 제출하지 않음

발표자 3 인, 토론자 3 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과 전체를 진행한 경우

발표문과 토론문 모두를 숙지하고 분과를 운영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상

- ④ 만약 [표 1]의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, [표 1]의 기준을 참고하여 회장단의 의결로 집행 가능

- ⑤ 해외초청자에 대한 원고비의 경우 [표 1]의 기준을 참고하여 회장단의 의결로 집행 가능하며 지속적인 필요시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

[표 1] 발표자, 토론자, 좌장 원고비 기준표

구 분	발표자	토론자	좌장
산출 근거	발표문 A4 10 쪽 혹은 PPT 슬라이드 20 개 내외 제출	토론문 1 쪽 이상 제출	발표자 3 인, 토론자 3 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과 진행
금 액	150,000 원	100,000 원	100,000 원

제 5 조 일용직 인건비 [신설 2024.03.25.]

1. 정의

- ① (일용직 인건비)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일정 내 1 일 8 시간 기준 학술대회 개최 준비 및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한 일용직 학생 및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
2. 계상기준

- ① 학부생, 대학원 석사과정, 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과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는 [표 2]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
- ② 1 일 8 시간 근무 시간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장단의 의결로 인건비를 가감하여 집행

[표 2] 일용직 인건비 기준표

구 분	박사과정생 /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	석사과정생	학부생
산출 근거	학술대회 개최 일정 내 1 일 8 시간 근무 각 구분 기준 별로 수행 업무의 수준이 상이함		
금 액	200,000 원	100,000 원	70,000 원

※ 위 산출 근거의 시간은 예시로 학술대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※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의 경우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

제 5 조 회의비 [신설 2024.03.25.]

1. 정의

- ① (회의장 임차료)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회의장을 임차하는 비용
- ② (회의비)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사전에 진행되는 회의 및 세미나에서 발생하는 비용

2. 계상기준

- ① 회의 및 세미나 내용이 해당 학술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
- ② 회의비는 1 인당 30,000 원 이내로 하며, 학회 명의의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③ 회의비 사용 시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(소속 포함),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첨부

제 6 조 내규의 개정 [신설 2024.03.25.]

1. 이 내규는 한국중동학회 회장단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음
2. 추가 내규나 세부 규정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, 회장단의 의결로 신설 규정이 추가될 수 있음

부 칙 [2024.03.25.]

이 내규는 2024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